

의안번호	제919호
의결 연월일	2025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자	박봉순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박봉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9
----------	-----

발의연월일: 2025년 4월 11일

발의자: 박봉순·이정범·유상용

김성대·김정일·박병천

박진희 의원

1. 제안이유

-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안 제1조)
- 나.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 정의(안 제2조)
- 다.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라. 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4조)
- 마. 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바. 한자 교육 추진을 위한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붙임
- 나. 비용추계: 첨부
- 다. 관계부서 협의: 중등교육과, 유치등교육과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한자 교육”이란 한자에 대한 이해와 습득을 통해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을 키우기 위한 교육을 말한다.
2.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3. “학생”이란 충청북도 내 학교에 재학 중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충청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해야 한다.

1. 한자 교육의 목표와 추진 방향
2.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 방안
3. 한자 교육 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
4. 교원의 한자 교육 역량 강화 방안
5. 그 밖에 한자 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① 교육감은 한자 교육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학교의 한자 및 문해력 향상 교육 활성화 지원
2. 한자 교육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지원
3. 한자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 지원
4. 한자 교육 관련 교원 역량 강화 연수
5. 그 밖에 교육감이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교육감은 한자 교육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충청북도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사업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한자 교육 활성화 및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정)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따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 법령

□ 교육기본법

[시행 2024. 12. 20.] [법률 제20562호, 2024. 12. 20., 일부개정]

제2조(교육이념)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② 학교는 공공성을 가지며, 학생의 교육 외에 학술 및 문화적 전통의 유지·발전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학교교육은 학생의 창의력 계발 및 인성(人性) 함양을 포함한 전인적(全人的) 교육을 중시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④ 학교의 종류와 학교의 설립·경영 등 학교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한자 교육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학생들의 한글 사용 능력과 문해력 향상을 위한 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2. 비용 발생 요인

- 한자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업 추진비

3. 관련조문

- 안 제4조(한자 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 안 제5조(한자 교육 지원 사업 추진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으로 함

나. 추계 결과

- (기존·확대)한자교육 콘텐츠 개발: 5,600,000원
 - 자료개발비: 5,000,000원
 - 동영상 수업콘텐츠: 100,000원 × 20개 영상 = 2,000,000원
 - 교과서 한자용어 문해력 향상 수업자료: 3,000,000원
(원고료) 10,000원 × 10매 × 5과목 × 3개 학년 × 2개 학교급(초, 중) = 3,000,000원
 - *과목예시: 국어, 사회(역사, 도덕), 과학, 실과(기술가정), 정보 등
 - 협의회: 10,000원 × 20명 × 2회 = 400,000원
 - 용품비: 100,000원 × 2회 = 200,000원
 - *다채움에 탑재하는 수업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통합 운영

- (기존)문해력 향상 한자 교육 교사 연구회 운영: 5,000,000원
 - 2,500,000원 × 2개 연구회(초등, 중등) = 5,000,000원
 - *충청북도교육청 교육연구회로 통합 운영

다. 재원조달방안: 보통교부금

5. 연도별 비용 추계표: 붙임

6. 작성자: 교육국 유초등교육과장 홍승표
교육국 중등교육과장 이미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6년)	2차년도 (2027년)	3차년도 (2028년)	4차년도 (2029년)	5차년도 (2030년)	계
세 입							
세 출		10,600	10,600	10,600	5,000	5,000	41,800
	한자교육 콘텐츠 개발	5,600	5,600	5,600	-	-	16,800
	교사 연구회 운영	5,000	5,000	5,000	5,000	5,000	25,000
재원 조달		10,600	10,600	10,600	5,000	5,000	41,800
의존 재원	소 계						
	국고보조금						
	보통교부금	10,600	10,600	10,600	5,000	5,000	41,800
	특별교부금						
자체 수입	소 계						
	자체수입						
지방채							
기 금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